

사고이월 추진계획 세부설명자료

(2014 회계연도)

기 획 경 제 국
기 획 예 산 과

1. 사고이월 개요

□ 개 념

- 각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임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사고이월요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해 운용해야함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2. 사고이월 요건

-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지방재정법 제50조)
 - ▶ 당해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 세출예산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구체적 행위를 한 것으로서
 - 2014.12.31까지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필한 것

▶ 불가피한 사유란

-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제조 등이 당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며,
-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 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됨.
※ 제외대상) 일상유지비 등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 집행잔액을 임의로 타 사업비로 원인행위한 경우, 막연한 시설부대비 등

▶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란

-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 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從된 경비로서, 主된 사업추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에 한함
※ 단,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이 불가함.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대형공사 등 입찰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③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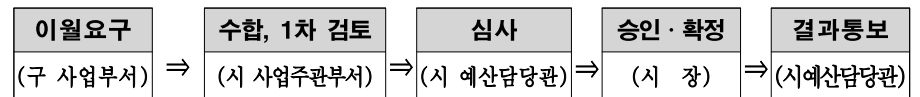
3. 사고이월 유의사항

- ①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재차 이월은 불가
- ② 2014년 원인행위하였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해 확인 후 사고이월을 요구할 것 (사고이월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 불가)
- ③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 ④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세출예산은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가능
- ⑤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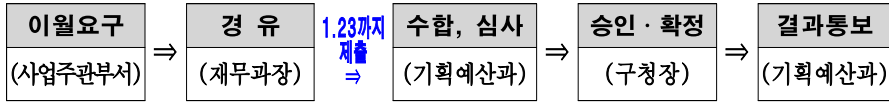
4. 사고이월절차 및 요구서 제출

① 사고이월 추진절차

○ 서울시 예산(재배정 예산)



○ **우리구 예산(국·시비 보조금 포함)**



※ 사고이월예산 승인·확정 통보후 이월사업 시행 (사업시행부서)

② **사고이월 요구서 제출**

- 2014회계연도 예산사업 중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사고이월요구서 등 제출서류 작성
- 서울시 재배정 사업의 경우, 재배정 받은 부서에서 사고이월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재배정한 부서)로 제출

▶ **제출서류**

- 2014 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엑셀) : 서식1
-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 : 서식2

- 사업별로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및 준공연기 이행 각서 첨부
- 보상비는 감정평가서, 지번별 평가액 조서 및 계약서,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첨부

② **수정요구서 제출**

- 출납폐쇄기간(2월28일)전 지출금액은 사고이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후 지출액이 발생될 때에는, 반드시 수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결산시 사고이월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
-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사업 지출액 수정요구서 제출 : '15. 2.23(월)
-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 '15. 2.27(금)

붙임 사고이월요구관련 서식 (1~4)

5. 행정사항

①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 **서울시 예산(재배정예산)**

- 제출서류 : 사고이월요구서, 사고이월사업별 명세서
- ※ 서울시 해당예산 사업주관부서로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기획예산과로 제출

○ **우리구 예산(국·시비 보조금 포함) : 2015. 1.23(금) 한**

- 제출서류 : 사고이월요구서, 사고이월사업별 명세서
- 재무과장의 협의를 득한 후, 원본 1부를 기획예산과로 제출
-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반드시 관련 회계장부 및 e-호조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하고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반드시 제출

참고자료

- 1. 예산운용 실무
- 2. 관련법령
- 3. 질의·회신 사례

1. 예산운용 실무

가. 예산의 이월

1) 예산이월의 의미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2) 이월의 종류

i)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 실 무 사 례 >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 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ii)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

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피하도록 함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인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실 무 사 례 >

<사고이월 부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백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iii)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이므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

i)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구 분 | 명 시 이 월 | 사 고 이 월 | 계 속 비 이 월 |
|-------|------------------|------------------|------------------|
| 이월 단위 | 편성목 단위까지 | 편성목 단위 | 편성목 단위 |
| 요구권자 | 자치단체의 장 | 부서(기관)의 장 | 자치단체의 장 |
| 승인권자 | 지방의회 | 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 |
| 요구시기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
| 확정시기 |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 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
| 기간연장 | 사고이월 가능 | 불가능 | 의회의결 연장, 사고 |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됨
- 이월예산의 집행 후 그 회계연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결산은 1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성격상 이월예산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ii)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사업 부서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서 구분하여 작성

예산 부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 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세입 부서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함
 - 이 경우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세입징수 결의서와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징수부에는 이월세입임을 표시
 - (예) 미차입자금의 이월에 의하여 기채한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는 지방채수입으로 분류 처리함

회계 부서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음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 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란(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금 고

- 이월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조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이 없이 통상적인 세계 현금으로 관리

iii)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 재이월 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 사용 하여도 무방

2. 사고이월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⑩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⑫ 제11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한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85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9)

-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 질의 · 회신 사례

1. 사고이월 확정전 집행가능 여부

< 질 의 >

-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 하려고 하는 경우 회계연도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부득이 1월에 대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월에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가능한지, 그 잔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지

< 회 신 >

-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의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담당업무과장에게 제출함
-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및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 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도폐쇄기간인 1월에 지난연도 예산을 소급하여 원인행위와 지출은 안됨

2.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의 사고이월 여부

< 질 의 >

- 한국토지공사에 조성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코자 분할 납부로 2002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있음. 2006년 완성예정인 부지공사가 토지공사측의 공사 완공기일 연장으로 잔금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다시 공사 완공일을 2008년도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음.
- 이 경우 지출원인행위 이전에 공사연장 통보를 받다보니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음. 잔금 납부 시점이 2008년으로 연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위하여 2007년도에 지출품의를 해야 하는지, 계속비사업은 아니냐 2002년 당시 토지매입 분할계약서 등을 지출원인행위로 보아 사고이월 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세출예산중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고이월로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 바
- 2007년 예산을 2002년 계약서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비사업이면 가능하다, 당초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고이월을 할 수 없음

3. 민간보조사업의 사고이월로 인한 대상자 변동가능 여부

< 질 의 >

-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고이월 후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당초 시행지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변동이 가능한지

< 회 신 >

-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는 그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등의 장애에 발생될 채권에 대한 지급의 의무를 확정된 행위이므로 사고이월 후 사업 대상자 변경은 불가함

4. 사고이월 가능여부

< 질 의 >

-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자 총공사비 126억원중 2004년에 시설비를 30억원 계상하여 2005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음
- 본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2005년 8월 입찰공고(총공사비 126억원)하여 2005년 10월 입찰신청결과 무응차로 유찰
- 이 경우 입찰공고를 원인행위로 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재정법(2005.8.4)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12.30)이 전면개정되어, 위 사례와 같이 특정 공사의 턴키 방식 입찰인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즉,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2005년 8월에 이루어진 입찰공고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원인행위 가능여부 및 보상비 사고이월 금액 확정에 대하여

<질 의>

-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없이 입찰 절차가 진행되다가 다음연도 2월달에 계약상대자가 결정되고 계약이 필요할 경우
 - 전년도에 원인행위 없이도 다음연도 2월달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
 -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고나서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100억원이며 보상평가 결과 12월 20일날 90억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보상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때
 - 지출원인행위를 안해도 된다면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되어 다음연도 2월달에 지출을 하여야 할 경우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안해 놓았다면 지출을 할 수가 없는 데 이럴 경우 사고이월을 하고나서 다음연도 3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인행위와 관련없이 사고이월의 대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이월금액을 확정하고, 집행시 확정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 공사 중지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 사고이월

<질 의>

- 2006년 공사발주 후 동절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관급자재를 금년도에 조달구매를 꼭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조달구매하여도 2006년 회계로 반영할 수 있는지요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관급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공사 공정예정표, 공사 현장상황, 입찰 및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상 관급자재 투입이 필요한 시점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나, 회계연도 마감이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비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산의 이월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7. 소송중인 공사대금 처리에 대한 질의

<질 의>

- 소송 중인 공사대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정산 처리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도말에 불용처리하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 불용처리 한다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등을 공제(정산) 후 실 지급 공사대금만 불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소송계류 중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회계연도가 지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지난경우 과년도 지출을 하거나,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이월예산을 부기외 집행 가능여부

<질 의>

- 2003년으로 사고이월한 청사이전관련 시설비 예산액을 활용하여 타부지 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집행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월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의한 청사이전관련 시설비를 타부지 매입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9.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고이월

<질 의>

- XX시에서 12월이 되어서야 간주처리로 보조금이 내시됨. 사업내용을 보니 민간인에게 자본을 보조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은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려면 내년 출납폐쇄기한인 2.28까지 자금이 지원되지 못함. 이런 경우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체방침만을 세워서 원인행위를 한 후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 채무의 확정 및 정당한 채주, 지급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사례에 대하여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지출 또는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10. 사고이월사업비중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처리

< 질 의 >

- 사고이월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 ① 사고이월사업비를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②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재이월이 안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한 업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 사고이월 사업연도에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연말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가 토지소유자의 이익신청(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른 보상비 지급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추진 중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다른 행정절차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경우

< 회 신 >

-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재이월 할 수 없는 것은 지방회계운영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운영 원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또한 이월예산 집행요령에도 명시되어 있음
- 자치단체의 회계운영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제반문제는 회계제도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상의 이유로 별도의 예외를 두는 경우는 없으므로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사고이월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불용처리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과년도 지출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법 제76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 소속 회계연도의 각 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사고이월사업의 원인행위변경 가능여부

< 질 의 >

-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로 인한 재원인 행위 사항은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예산의 부족으로 추가 원인행위는 불가하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마땅히 원인행위를 감액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 회 신 >

- 사고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함

12. 사고이월사업비(부대경비) 사용시기

< 질 의 >

-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2000년도에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00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2000년 사고이월사업이므로 출납폐쇄기한(2.28) 이후부터 가능한지

< 회 신 >

- 명시이월한 사업예산이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할 경우 사고이월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는 부대경비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된 부대경비는 지출 원인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출납폐쇄기한 등에 관계없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함

13. 사고이월사업의 계약해제시 타 업체와의 계약 가능여부

< 질 의 >

- '99년 12월에 계약하여 사고이월된 건축공사가 월동기와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던 중 수급자로부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1항제2호(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의거 공사계약 해지 요청으로 2000년도에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건축공사를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사고이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계약해제와 달리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해계약의 법적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계약은 계약해지로서 법 효력이 종결되며 사고이월예산의 범위 및 연도내에서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4. 사고이월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가능여부

< 질 의 >

- 2000년도에 편성된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준공기한을 2001. 12. 24일까지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사업준공 기한내 완공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서에서 계약부서로 2002. 1. 19일까지 준공기한 연기요청을 하였을 경우 변경계약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지

< 회 신 >

- 당해 회계연도(2001.12.31일전)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02. 1.19일까지 준공기한 연기를 처리해 줄 수 있으며, 준공검사시한(14일) 및 대가지급시한(14일)을 감안하여 반드시 출납폐쇄기한(2002. 2.28일)이전까지 지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출납폐쇄기한(지방재정법 제4조)이후에 제반서류 등 절차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정산이 어려우며,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함